### 15 자동차 도장작업자에서 발생한 비호지킨림프종

## 1 / 개요

근로자 ○○○은 1994년 12월에 □자동차(주)에 입사하여 1996년 1월 정규직 직원으로 발령받은 이후 소형제조 도장 수정반에 근무하였고, 2003년 3월 트럭차체부 상도반으로 전입하였다. 2001년 9월부터 2003년 9월까지 소형제조 도장 수정반으로 재배치되어 근무하였으며, 이후 트럭자재반 자재과로 전환 근무하였다. 2014년 3월경안면마비, 호흡곤란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2014년 4월 T세포 림프아구성 림프종진단을 받은 뒤 2014년 11월 사망하였다.

# 2 작업환경

근로자 ○○○은 1994년 12월부터 2003년 9월까지 도장 수정작업을 수행하였다. 수정 도장 작업은 주로 스프레이 도장을 하였고, 일부 붓(터치) 도장도 함께 수행하였다. 당시 작업 공간은 중부스/경부스/락카 부스 등에서 이뤄졌는데, 중부스와 경부스는 측면에 배기장치가 설치 되어있었으나 장소가 여의치 않은 경우 배기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락카 부스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근무시간은, 정규직 발령 직전까지는 주/야 2교대 근무를 하였으며, 도장 수정반의 경우 업무의 특성이 명확했기에 순환근무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일주일에 6일 근무하였다. 또한 일요일에 특근(12시간)하는 경우도 많았다. 트럭 상도반에서는 주로 스프레이 도장 작업을 하였고 약 3분에 1대 정도의 속도로 도장 작업을 시행하였다. 주/야 2교대 근무를 하였으며, 생산량이모자랄 경우 점심시간 오버타임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당시 안전 인식의 부재로 기본적인 보호장구를 잘 착용하지 않거나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얇은 마스크를 쓰고 근무를 하였다.

## 3 해부학적 분류

- 림프조혈기계암

#### 유해인자 4

- 화학적 요인(벤젠)

# 의학적 소견

근로자 ○○○은 2014년 3월 중순 경 안면마비, 호흡곤란 증상으로 □한방병원 입 원 중 흉수 소견 보여 □종합병원으로 전원하였고 그 후 시행한 흉부 CT검사에서 종 격동 종양 의심 소견보여 2014년 4월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었다. 내원시 시행한 종 격동 종양 조직검사에서 T세포 림프아구성 림프종으로 진단받았다. 이후 7월 9일까지 총 4회에 걸쳐 관해유도 복합항암요법을 시행하였지만 재발소견을 보여 반복적으로 재관해요법을 시행하였다. 이후 재관해요법에 불응성 소견을 보여 2014년 11월 사망 하였다.

####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 ○○○은 1994년에서 □자동차(주)에 입사하여 8년 9개월간 대부분 도장 수정작업을 수행하였고, 10년 7개월간 자재과에서 군수부품 입불출 업무를 수행하였 다. 근로자는 도장 수정작업을 수행하면서 벤젠에 노출되었고, 과거 유사작업의 측정 결과 및 연구 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벤젠의 누적 노출량이 10.9ppm·yr 정도로 추 정된다. 피부노출과 추가 작업 시간을 고려할 때 더 많은 노출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 기 때문에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끝.